

●**고용노동부공고 제2021-508호**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·위험성, 연간 제조·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용노동부장관

※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el.go.kr>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습니다.